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19. 5. 31)
제2019-5월호(통권 45호)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사후활용 전략

작성: 김자영(한국체육대학교)

- I 국제경기대회 개최현황
- II 국제경기대회 유치 절차
- III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전략
- IV 참고문헌

요 약

국제경기대회는 포괄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벌어지는 모든 체육경기대회를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동계·하계올림픽, FIFA월드컵, F1자동차경주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 뿐만 아니라 세부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경기대회를 개최 하게 되면 국제 스포츠 위상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지양해야한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예산을 무한정 배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부실한 대회의 유치 및 개최는 국가의 대외 인식을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혹은 체육단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식별해야 된다. 유치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유치활동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국제경기대회 중에서도 옥석을 구별함으로써 체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유치·개최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절차들을 이행해야한다. 국제대회 유치절차는 먼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타당성 조사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승인을 얻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국내절차 이행 후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의 국제 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회유치에 성공하면 대회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하도록 유치결정 및 조직위원회 결성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 후에는 대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회전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회 후 활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대회가 끝난 후 지속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종목별 유사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한다. 또한 동호인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는 관련 체육종목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서 벗어나 종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 국제경기대회 개최 현황

1. 주요 국제경기대회 개최지

1)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유형

국제경기대회는 포괄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모든 체육경기대회를 지칭하며 형태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종목을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경기대회’와 한 종목의 스포츠에서 국가 간에 경쟁하는 ‘종목별대회’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경기대회’와 ‘종목별대회’는 그 대상과 규모, 지역, 계절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류대회와 각종 초청대회 등을 포함하면 매우 다양한 수의 국제경기대회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도 대한체육회 및 각종 협회, 각 팀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경기대회를 주최 혹은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 국제경기대회 종류

구분	대회종류
올림픽	하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 유스올림픽
지역별 종합대회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동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대상별 종합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청년대상) - 마스터즈대회(은퇴선수대상세계대회) - 세계군인체육대회(군인대상세계대회) - 스페셜올림픽 하계 및 동계대회 - 월드게임(GAISEF 주관 비올림픽종목대상)

국제경기대회 중 종합경기대회는 올림픽경기대회가 그 정점에 있고 올림픽은 계절별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대상별로는 장애인올림픽과 유스올림픽이 있으며 올림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합대회는 지역별 혹은 대상별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지역별 구분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대회는 하계 및 동계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대회가 있으며 대상별 구분에 속한 종합대회는 대학생 연령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즈대회 등 참가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개최되는 대회와 군인대상의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적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및 동계 스페셜 올림픽 등이 있다.

국제경기대회 중 종목별대회는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정점으로 남녀대회, 연령별 대회, 지역별대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축구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Fédération International de Football Association)의 주관으로 남자20세이하월드컵, 여자20세이하월드컵, 남자 17세이하월드컵, 여자17세이하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클럽월드컵, 풋살월드컵, 비치사커월드컵 등이 있으며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AFC 아시안컵대회 등이 있다. 축구월드컵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벤트가 세분화가 되어 있으며, 축구 이외의 종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 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 실적

국내에서 대형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안게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에는 2014인천하계아시안게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의 대형 종합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표 2. 국내 개최 종합 국제경기대회

대 회 명	기 간	장 소
제17회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9.19.~10.4	인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7.3.~7.14	광주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2015.10.4.~10.9	문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2018.2.9.~2.25	평창

종목별 경기대회를 보면 가장 큰 규모인 세계선수권대회급 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1975년과 1985년과 1989년의 세계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2017년에는 무주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태권도를 제외하면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는 1978년 세계사격 선수권대회가 서울의 태릉사격장에서 개최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때는 단일종목의 세계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 기념우표가 발매될 정도로 우리나라

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등 간헐적으로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그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세계적인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개최 빈도가 빈번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이어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유치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 국제경기대회는 2016년도에는 45개, 2017년 49개, 2018년 5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내지역별 국제경기대회 개최 실적

	2016	2017	2018	합계
서울	10	10	9	29
부산	2	2	4	8
대구	1	1	-	2
인천	6	5	3	14
광주	-	1	-	1
대전	-	-	1	1
울산	-	-	1	1
경기	4	2	4	10
강원	7	9	9	25
충북	1	1	4	6
충남	-	2	-	2
전북	2	7	5	14
전남	1	2	4	7
경북	4	2	4	10
경남	3	1	3	7
제주	4	4	4	12
합계	45	49	55	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대형국제경기대회의 유치가 지난 30-40년에 비해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경기의 다양성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많은 종목과 형태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는 이 대회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다. 최근 대형 국제경기대회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과 2030년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들 경기 외에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 및 중형 규모의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2. 국제경기대회 개최 의의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지 증진,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개최지역의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후생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 경기대회 개최의 의의는 국제 스포츠 위상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국가 브랜드 제고 등 네 가지이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최국의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는 스포츠 내부적으로는 홈경기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더불어 ‘국제스포츠교류,’ ‘스포츠외교의 장,’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국제경기대회를 치르는 동안 참가국 선수 및 회원국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치, 산업, 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하지만 국제스포츠 이벤트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올림픽 또는 월드컵을 통해 입증되었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민들의 체계적 조직운영과 연대의식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비계량적 국가 신임도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한 개최지역의 경기활성화 효과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대회 참가자와 관람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과는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광산업과 그 궤를 같이한다. 실질적으로 국제 스포츠 회의 개최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가장 큰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해당 대회 및 연계된 이벤트들로부터 창출된 수익 및 관광 수익이 유치 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이용되면서 유치 지역의 높은 소득 증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영향으로 입장료

수입, 행사장 내의 매출액, 경기장 광고 수입, TV 방송권 등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경기대회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으로 부상하면서 국외 기업의 후원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스포츠시설이나 국제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하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개최국 국민들에게 사회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사회·문화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례로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의 개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넷째, 대형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개최국의 인지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국제경기대회 개최는 국가브랜드의 가치의 제고, 국가위상의 고양 등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개최가 결정된 대회에 대해서는 착실한 준비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3.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 개최된 대형 국제경기대회는 지난 40년간 17개 대회가 개최하는 데 불과했으나 2010년도 이후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보면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이후에 유치된 F1 자동차경주대회 7회(2016년 대회 포함)를 포함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은 우리나라의 해당 종목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스포츠의 위상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유치 추진 중인 국제스포츠이벤트도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일정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갖고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두 번 연속적인 도전의 실패를 고려한다면 그간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연속 세 번의 도전이 과도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과 유치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는 바는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 지원이 이루어지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회는 지자체 혹은 해당 협회의 주도로 유치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 상황은 체

계적인 유치 전략의 부재 속에서 재정의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대회 중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대회를 유치한 후 국가재정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후 승인을 받거나 일부 대회는 사후 승인에도 실패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도 있어 대회의 유치에서부터 재정적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등 체계적인 유치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국가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없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대회 주최 측과 접촉하거나 국제경기대회 심사승인제도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예산을 무한정 배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부실한 대회의 유치 및 개최는 국가의 대외 인식을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혹은 체육단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I. 국제경기대회 유치 절차

1.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식별

한정된 국가 체육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국제경기대회 개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역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삼아 무분별하게 유치경쟁에 뛰어드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은 국비보조, 지방교부금, 지방잉여금 등 일반예산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도로는 50%, 경기장은 30%까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4. 연도별 국제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649	5,229	7,223	19,397	33,513	32,673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대회 기금지원현황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지자체 혹은 단체는 직접 및 간접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 법률이 정한 상한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심사승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유치활동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보다 경제적으로 개최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현안 과제는 경제성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국제경기대회 개최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 개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방안은 사전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경제성에 대한 정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후생적 효과가 큰 국제경기대회로서 총체적인 국가후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이러한 대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제경기대회가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하며, 유치 가능성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IFA월드컵이나 하계올림픽 개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개최의 가능성은 국제적인 경합 때문에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치 가능성까지 국제경기대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경제성 있는 국제대회를 선별하는 이유는 유치단계에서부터 무분별한 유치활동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국제경기대회 중에서도 옥석을 구별함으로써 체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경제성 있는 국제대회의 선별은 경제적 효과, 사회후생적 효과 등 각종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측정하는 방법론과 기존 대회개최의 성과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기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이를 참고함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소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국제경기대회 유치 활동에 착수하는 것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분석 자료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될 경우 재정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성 분석 연구 등 풍부한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개최 지역은 관련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후생수준 증가 등의 효과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동 대회 개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후생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개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국내외 관람객의 유치 가능성,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새롭게 건립해야 하는 시설의 장기적인 활용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나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역을 개최지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이러한 대회의 유치가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유치 기획단계 이전부터 해당 대회와 관련된 직접 및 간접시설의 준비, 대회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대회 유치 성공 이후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도시 인프라와 체육경기시설이 더 잘 갖춰진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특정 평가지표 면에서 항구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는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안은 광역권별로 국제경기대회의 순환개최 또는 적정수준으로 안배하는 정책을 반영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중장기 종합계획과 전국적인 체육경기시설 배치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지자체들로 하여금 개최 기회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 및 개최하기 위한 사전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비용최소화와 지역적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에 달려있으나 최소한 기존 경기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 새롭게 건설될 체육시설의 사후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방안으로는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장기계획, 전국 권역별 체육경기시설 배치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체육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의 원용, 특정 지자체 또는 경기단체의 국제경기대회 개최 요청, 고시 후 여타 개최 희망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 효율적인 유치계획을 제시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가 특정기간동안 지원 가능한 관련 재정규모와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당국과 사전협의한 후 고시하는 방식의 도입 등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

1) 관계법령 검토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계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은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행사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 제 198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58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 대상대회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SF)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선수와 임원을 포함)이 5%이상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선수와 임원을 포함)이 5%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에 적용된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행사주관기관 또는 유치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 신청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제출 시에 관련 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제기구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내용의 유치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 후 별도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국제행사 개최계획서에는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예상참가인원, 대회개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대책 등 개요, 해당 국제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자원 및 자원 조달 대책,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기존 시설물의 활용계획, 예상 기대효과 및 대회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유치여건 및 유치계획, 기타 해당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제행사 유치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유치 희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수립 시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훈령 제 377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이 규정의 허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행사 포함)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행사를 내실 있게 유치·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결정에 관한 일반절차,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 및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확보방안 및 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행사개최업무와 관련된 일반지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세부 활용계획, 사후관리비용 추계 및 비용조달계획,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국제행사주관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유치 절차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유치관련 기관으로부터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유치 절차로 첫 번째 단계는 대한체육회에서는 국제위원회가 유치 승인을 담당하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걸쳐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타당성 조사 및 관계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 및 경기단체에서 국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유치기관은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치기관은 국제체육대회의 개최 목적 및 취지, 국제체육대회의 개최일시, 장소, 예상참가인원, 대회개최에 따른 소요인력 및 대책 등 개요,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 대책, 국제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기존 시설물의 활용계획, 예상 기대효과 및 대회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 유치여건 및 유치계획, 기타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국제체육대회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국제체육대회는 전문연구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부 승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내

에 유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체육대회개최계획서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개최 대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행사개최 계획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 타당성검토보고서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체육대회의 개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유치희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 성검토보고서를 심사하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개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의 국제 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 유치에 대한 국내 승인을 받으면 국제연맹에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절차에 따라 유 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회유치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유 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국제체육대회 유치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대회유치에 성공하면 대회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회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하도록 유치결정 및 조직위원회 결성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단계는 대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행사체육대회 행사 종료 후 국제체육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후평가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국제행사내역을 종합하여 다음연 도 3월말까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 국제대회 유치절차



그림 2. 국제경기대회 정부승인 및 유치 절차

Ⅲ.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전략

1. 절차이행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절차 및 국제연맹과 관련된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절차를 우선 이행하여야지만 국제연맹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 절차에 대한 이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경기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유치 활동을 승인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한 관계기관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각 절차별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체육대회,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여 대회유치전 대회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대회 유치를 승인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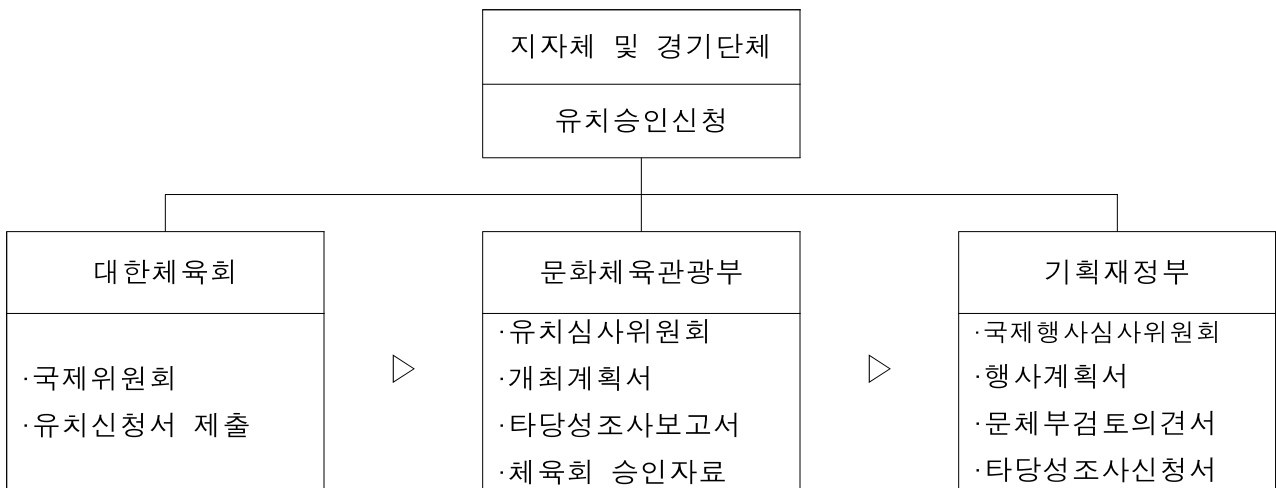


그림 3. 국제경기대회 유치 관련 기관

국내절차 이행을 통해 유치 승인을 획득하여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공식적인 유치 활동이 가능해 지며, 유치 활동에 필요한 국비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절차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2. 전국적인 붐업(Boom-up) 조성

국제경기대회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회전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경기대회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작년에 개최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스키대회 개최 등 사전행사인 테스트 이벤트를 2016년부터 진행하였고, 대회 1년 전에는 G-1년 페스티벌 및 세계불꽃축제로 올림픽 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올림픽 100일 전에는 올림픽 성공기원을 주제로 D-100일 축제를 개최하여 강원도 곳곳에서 100원 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런 대규모적인 행사 외에도 홍보대사 위촉,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림 4.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행사

대회개최 이전에 이뤄지는 유사대회 및 행사들은 대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대회에 방문하는 관람객 및 관광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대회 개최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진행 및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경기대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대회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사후 활동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회 후 활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국제경기대회는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대회 개최로 만들어진 분위기를 이어나가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된 시설 및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지역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시설 활용

국제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가 진행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 2002 한일월드컵 개최 시 국내에서 월드컵을 위해 전국적으로 10개의 경기장이 건립되었지만 현재 시설이 활용되는 수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 투자에 따른 사후 활용 미흡 문제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전에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의 경우 복합 쇼핑몰 및 공연 개최 등으로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는 월드컵경기장이 되었다. 사용이 가능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는 한 번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의 활용 등 구체적이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동호인 확대

국제경기대회는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겨루는 장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는 국제적인 선수들의 실력을 직접 관람하고,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종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의 경우 동호인들의 관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적 실력을 갖춘 선수들의 경기관람을 토대로 국내 배드민턴 대회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이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관심을 이끌었지만 동호인으로의 확대는 미비한 실정이다. 동호인 확대는 관련 체육종목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서 벗어나 종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의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유사대회 개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개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종목의 대회를 진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제경기대회는 단발성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감이 따른다. 따라서 대회 개최 이후 유사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종목별 특화된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의 경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제육상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국제마라톤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2017년에는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 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전국꿈나무실내육상경기대회를 국내 동호인 및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구는 기존에 구축한 육상 종목 인프라를 활용하여 육상 종목 대회를 운영하여 육상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한 경우 같은 국제경기대회 다시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최한 국제대회와 유사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개발하여 관련 대회를 개최하여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V. 참고문헌

- 강원뉴스(2017. 02.01). 2018평창동계올림픽 G-1년 페스티벌.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4_05?articleSeq=20170201105051882&mode=readForm&curPage=8&scancode=34&mccode=4
- 국민체육진흥공단(2019). 기금지원내역.
- 뉴스1(2017.10.23). 속초시, 28일 올림픽 G-100 축하이벤트 개최. <http://news1.kr/articles/?3131390>.
- 대외정책경제연구원(2013).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제경기대회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집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상하(2008). 국제스포츠대회의 국내유치에 대한 전략적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전북발전연구원(2015).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결과제 및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이슈브리핑 141.
- 트레블데일리(2017. 10. 23). 평창올림픽 G-100 붐업 캠페인 전개.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9>
- 최종국(2015). 국제스포츠대회 사후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집위원회

편집 위원: 정지명(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박선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